

의안번호	2203643
의 퇴 인	주철현의원
회 답 일	2024.12.10.
추계번호	24D3505

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제2항 (국가의 책무)	국가는 수사 및 공보의 담당자 등에게 인권보호와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2조 (수사과정 기록)	- 수사담당자는 수사과정을 기록하여야 함 - 수사담당자는 사건관계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고 보존하여야 하고, 녹화 및 보존 등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3	안 제37조 (전용조사실)	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,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조사실을 이용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39조(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)	수사담당자는 피해자, 고소인·고발인 등 참고인 및 그 가족(이하 “피해자등”이라 함)이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,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출석·귀가 시 동행, 임시숙소 제공, 주거지 순찰 강화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41조(장애인의 특례)	수사담당자가 청각장애인, 언어장애인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·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42조(외국인의 특례)	수사담당자가 외국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여 주어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58조(인권보호관)	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인권보호관을 두고, 인권보호관은 수사 및 공소에서 인권 침해 여부 점검, 수사담당자 및 공보담당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,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권보호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함	의무규정
8	안 제61조(교육의 실시)	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 및 적법 절차 보장을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제2항 (국가의 책무)	미대상: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'인권교육'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(2024년 기준 2억 400만원)
2	안 제12조 (수사과정 기록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37조 (전용조사실)	미대상: 청소년·여성·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된 전용조사실이 조성되어 있으며,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4	안 제39조(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)	미대상: 법무부, 대검찰청, 경찰청 및 민간단체에서 안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변 보호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, 법무부의 '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' 사업에는 2024년 예산 기준 34억 4,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5	안 제41조(장애인의 특례)	미대상: 법무부는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·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, 법무부의 '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' 사업에 2024년 예산 기준 16억 3,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
6	안 제42조(외국인의 특례)	미대상: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경찰청·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·대검찰청에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중임 - 참고로 2024년 기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비는 총 46억 3,400만원임
7	안 제58조(인권보 호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8	안 제61조(교육의 실시)	미대상: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'인권교육'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(2024년 기준 2억 400만원)

2. 상세 사유

□ 수사과정 녹음 또는 녹화 및 보존(안 제12조)

- 제정안에 따라 수사담당자가 사건관계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고 보존하는 경우, 영상녹화장비의 구매 및 설치비용 등이 발생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2024년 9월 전국 검찰청에 설치·운영 중인 영상녹화조사실 개수는 903개이고 영상녹화시스템은 유지관리 업체 직원 10명이 관리하고 있으며, 2023년도 영상녹화조사 이용자 수는 총 4,001명, 유지관리비는 1.93억원임
- 다만, 추가로 영상녹화장비 도입이 필요한 청사의 수, 청사당 설치 대수, 도입방식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현 단계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□ 인권보호관(안 제58조)

- 제정안에 따라 각 수사기관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참고로,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음¹⁾
 - －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(차관급)이 겸직하고 있고 임기는 3년이며,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이 있음
- 다만 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인권보호관의 수, 임기 및 직위 등을 예측할 수 없고 군인권보호관과 제정안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, 업무량 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[참고자료] 군인권보호관

1) 2024년 예산 기준 ‘군인권 보호 및 증진’사업으로 5억 1,200만원 편성
 2024년 기준 군인권보호관의 연간급여(수당 포함 금액)은 연 151,260,000원이고, 기본급 외 수당은 가족수당(연 480,000원), 정액급식비(연 1,680,000원), 직급보조비(연 11,400,000원)임

[참고자료] 군인권보호관²⁾

□ 군인권보호관의 직급, 임기

-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(차관급)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
- 김용원 상임위원(現군인권보호관) 임기: 2023.2.6.~2026.2.5. (3년)

□ 현재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

-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중 하나로, 다른 소위원회와 겸임 중인 인권위원 3인으로 구성됨
- 현재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김용원 상임위원(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), 한석훈 위원, 원민경 위원으로 구성
- 비상임위원인 한석훈 위원(임기: 2021.10.15.~2024.10.14.), 원민경 위원(임기: 2023.7.24.~2026.7.23.)은 연간급여가 지급되지 않음
- ※ 인권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이며, 군인권보호위원회 등 소위원회는 따로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음

□ 군인권보호관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처 현황

-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권보호국, 군인권보호총괄과, 군인권조사과, 군인권협력지원과 존재
- 군인권보호국 직급별 인원(기준정원)

부서명		계	국장	부서장	5급	6급	7급	9급	비고
군인권 보호국	군인권 보호총괄과	8	1	1	2	3	—	1	
	군인권 조사과	7	—	1	2	2	2	—	군인권보호관 신설 전부터 존재
	군인권 협력지원과	7	—	1	2	4	—	—	
합 계		22	1	3	11	15	9	10	

□ 직급별 평균 연간급여(수당 포함 금액)

- ※ 각목명세서 기준,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평균 연간급여임에 따라 군인권보호국 직원의 직급별 평균 연간급여와 다를 수 있음

직급	평균 연간급여
고위공무원	143,539,000원
3급	128,383,000원
4급	112,116,000원
5급	108,175,000원
6급	73,067,000원
7급	62,664,000원
8급	48,088,000원
9급	45,754,000원

2) 자료: 국가인권위원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